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923

발의연월일: 2024. 8. 19.

발 의 자:전종덕·이병진·서왕진

정혜경 • 윤종오 • 김재원

박홍배·송재봉·김 윤

서미화 · 한창민 · 전진숙

의원(12인)

제안이유

식량문제는 기후변화에 따른 수확량 감소와 농지의 축소, 국제 공급 망 위기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국가적 안보의 문제로까지 확장되었음.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은 국가의 책임임.

쌀 재배면적은 2003년 101만 6,030ha에서 2023년 70만 8,012ha로, 쌀생산량은 2003년 445만톤에서 2023년 370만톤으로 감소했음.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2022년 49.3%에 불과하고, 연간 1,700만톤이상의 곡물을 수입하는 세계 7위 곡물 수입국이며, 세계식량안보지수(GFSI) 순위는 39위로 OECD 가입국 중 최하위권으로 특히 식량안보전략은 0점을 받아 국가 차원의 대응이 절실함.

그러나 장기적인 식량안보 전략이 명확하지 않고, 쌀값을 안정화하지 못해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기반이 무너지고 있음.

이에 쌀의 생산과 수급을 안정시키고 가격보장을 위해서 양곡생산

에 투입한 생산비용을 보전하고 농업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공정가격으로 공공비축양곡 70만톤 이상을 확보하고 쌀 자급률 제고를 법률로 명문화하여 식량주권을 실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농업인이 양곡 생산에 투입한 모든 생산비용을 보전하고 농업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가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정가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한 가격을 "공정가격"이 라 함(안 제2조제8호).
-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을 수립할 때 미곡의 완전한 자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3조제1호).
-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공공비축양곡 70만톤 이상을 공정가격으로 매입하여 비축·운용하여야 하고, 공공비축양곡을 판매할 경우는 판매지역의 당시 시장가격으로 하여야 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3항).
-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을 수입하려는 경우 국내 수급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수입한 양곡이 국내 양곡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입을 중단하여야 함(안 제 11조제2항).
-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 수급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

여 전년도 미곡 생산량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미곡("공공수급미곡")을 계약재배를 통해 확보하여야 하고, 공공수급미곡은 공공급식 등에 사용할 수 있음(안 제16조의3).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당해 연도에 생산된 미곡의 시장가격이 공 정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전부 지원하여야 함(안 제16조의4 제1항).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를 "양곡을 자급하고 식량자급률을 제고하며 생산자를 보호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식량공급의 안정화"로 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공정가격"이란 농업인이 양곡 생산에 투입한 모든 생산비용을 보전하고 농업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가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6조의5에 따른 공정가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한 가격을 말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본목표"를 "기본목표(미곡의 완전한 자급 달성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쟁 및 기후위기로 인한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공 공비축양곡 70만톤 이상을 공정가격으로 매입하여 비축·운용하여 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급조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비축양곡을 판매하여야 하며 판매가격은 판매 지역의 당시 시장가격으로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곡을 수입하려는 경우 국 내 수급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수입한 양곡이 국내 양곡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입을 중 단하여야 한다.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6조의3(공공수급미곡의 관리·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수급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년도 미곡 생산량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미곡(이하 이 조에서 "공공수급미곡"이라 한다)을 계약재배를 통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가격으로 공공수급미곡을 매입하고 매입한 미곡은 공공급식 등에 사용할 수 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공수급미곡의 품종에 대해서는 재배지역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품종으로 하고, 공공수급미곡을 매입할 때에는 친환경 방식으로 재배한 미곡을 우선적으로 매입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계약재배의 방법·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적절한 품종의 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4(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미곡의 손실차액 보전) ①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은 당해 연도에 생산된 미곡의 시장가격이 공정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전부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차액의 산정 기준 및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의5(공정가격위원회) ① 공정가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 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공정가격위원회를 둔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가격을 공정가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 ③ 공정가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
 -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 3. 양곡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 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공정가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양곡의 효율	제1조(목적)		
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			
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u>식량</u>	양 <u>곡</u>		
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을 자급하고 식량자급률을 제		
<u>국민경제</u>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고하며 생산자를 보호함으로써		
로 한다.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식		
	<u> 량공급의 안정화</u>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u> <신 설></u>	8. "공정가격"이란 농업인이 양		
	곡 생산에 투입한 모든 생산		
	비용을 보전하고 농업인의 인		
	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		
	는 가격으로서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이 제16조의5에 따른		
	<u>공정가격위원회의 심의·의결</u>		
	을 거쳐 고시한 가격을 말한		
	<u>다.</u>		
제3조(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제3조(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수립) ① (생 략)	수립) ① (현행과 같음)		

- ② 양곡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②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2. ~ 4. (생 략)
- ③ ④ (생 략)

제10조(공공비축양곡의 비축・운 제10조(공공비축양곡의 비축・운 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 기 위하여 공공비축양곡을 비 축 · 운용하여야 한다.

- ② (생략)
- ③ 공공비축양곡의 매입・판매 가격은 매입・판매지역의 당시 시장가격으로 한다.
- ④ (생략) 제11조(양곡의 수출입) (생 략)

- ----기본목표(미곡의 완전한 자급 달성을 포함한다)-----
- 2. ~ 4. (현행과 같음)
- ③ ④ (현행과 같음)

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쟁 및 기후위기로 인한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국 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공공비축양곡 70 만톤 이상을 공정가격으로 매 입하여 비축 · 운용하여야 한다.

- ② (현행과 같음)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 의 수급조절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 비축양곡을 판매하여야 하며 판매가격은 판매지역의 당시 시장가격으로 한다.
- ④ (현행과 같음)
- 제11조(양곡의 수출입)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신 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 항에 따라 양곡을 수입하려는 경우 국내 수급상황을 고려하 여야 하며, 수입한 양곡이 국내 양곡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입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16조의3(공공수급미곡의 관리 ·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은 미곡 수급에 대한 공공성 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년도 미 곡 생산량의 10분의 1에 해당 하는 미곡(이하 이 조에서 "공 공수급미곡"이라 한다)을 계약 재배를 통하여 관리·운용하여 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 가격으로 공공수급미곡을 매입 하고 매입한 미곡은 공공급식 등에 사용할 수 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공 수급미곡의 품종에 대해서는 재배지역의 특성에 맞는 적절 한 품종으로 하고, 공공수급미 곡을 매입할 때에는 친환경 방

<신 설>

<신 설>

- <u>식으로 재배한 미곡을 우선적</u> 으로 매입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계약재배의
 방법・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적절한 품종의 기준 등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제16조의4(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미곡의 손실차액 보전) ① 농 립축산식품부장관은 당해 연도 에 생산된 미곡의 시장가격이 공정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 액을 전부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차액의 산정기준 및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의5(공정가격위원회) ① 공 정가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 부에 공정가격위원회를 둔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 가격을 공정가격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 ③ 공정가격위원회는 위원장 1

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 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 위공무원
-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 3. 양곡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 이 풍부한 전문가
-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공정가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